

상임이사회규정

제정 1999. 6. 9
개정 2000. 4. 26
개정 2003. 6. 16(개폐정리)
개정 2005. 6. 21(개폐정리)
개정 2006. 12. 8(개폐정리)
개정 2007. 5. 4
개정 2007. 6. 25
개정 2011. 6. 9(개폐정리)
개정 2013. 4. 30(개폐정리)
개정 2014. 9. 19(개폐정리)
개정 2015. 6. 30(개폐정리)
개정 2015. 12. 24(개폐정리)
개정 2020. 5. 27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51조에 의하여 설치한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상임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제외한다.<개정 2005.6.21.><개폐정리 2015. 6.30>

② <삭제 2003.6.16>

③ 상근감사위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신설 2005.6.21>

제3조 (소집권자 및 의장) ① 상임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
②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

제4조 (소집) ① 상임이사회는 제3조에 의한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의결사항은 회일 3일전까

지, 그 외의 의결사항은 회일 1일전까지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상임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0.4.26 , 2003. 6.16, 2020. 5.27>

제5조 (의결사항) ①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는 보증·융자업무 또는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단서개정 2000.4.26.><개정 2020. 5.27>

1. 이사회규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<신설 2000.4.26>
2.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소관이 아닌 기타 공사규정의 제정 또는 폐폐<개폐정리 2014. 9.19, 2015. 6.30>
3. 건당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. 다만, 유입물건과미분양주택등처리규정에 의한 유입물건, 미분양주택 및 환급이행사업장의 취득, 처분은 제외한다. <단서신설 2000.4.26>
4. 건당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계약(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제외한다)의 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 5.27>
5. 이사회규정 제8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정한 범위내에서의 채무부담행위의 승인
6. 천만원 이하의 출자·출연. 다만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업체에 대한 출자전환은 제외한다. <개정 2000.4.26, 개정 2007.5.4 단서신설 2007.6.25>
7. 다른 규정에서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<개정 2020. 5.27>
8. 기타 이사회에서 개별 의결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또는 조건을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00.4.26><개정 2020. 5.27>

②상임이사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일부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의결후 지체없이 비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00.4.26>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각 비상임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신설

2000.4.26)〈개폐정리 2015. 6.30〉

제6조 (결의방법) ①상임이사회 의결은 재적상임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〈개정 2020. 5.27〉

②상임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〈개정 2020. 5.27〉

③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〈개정 2020. 5.27〉

제7조 (보고)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

제8조 (의사록)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. 〈개정 2000.4.26 , 2003. 6.16〉

제9조 (간사) ①상임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
②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상임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〈개정 2006.12.8〉 〈개폐정리 2011.6.9., 2013.4.30., 2015.12.24〉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결의사항에 관한 특례) 종전 주택사업공제조합 이사회규정에서 별표로 정한 이사회결의사항은 정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시 까지 이를 상임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한다.

부 칙 〈2000. 4. 26〉

이 규정은 200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3. 6. 16〉

이 규정은 200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5. 6. 21〉

이 규정은 상근감사위원이 선임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6. 12. 8〉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7. 5. 4〉

이 규정은 2007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7. 6. 25〉

이 규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1. 6. 9〉

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3. 4. 30〉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4. 9. 19〉

이 규정은 201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5. 6.30〉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5.12.24〉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20. 5.27〉

이 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